

수원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1가단176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변 론 종 결 2023. 1. 31.

판 결 선 고 2023. 3.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8. 30. 체결한 서울 서초구 D빌딩 내 가. 1, 2층

E(예식장), 나. 지하 1층 F(구내식당)의 사업권에 관한 운영권 지분 30%의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C은 서울 서초구 D빌딩 1, 2층 E(예식장), 지하 1층 F(구내식당) 사업에 관한 운영권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 70%를 가진 피고와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분 30%의 가치는 3억 원 정도인데, C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7. 8. 30.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담채무 156,000,000원 및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고 있는 채무 139,947,830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30%를 피고에게 전부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

원고는 C에 대하여 192,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 또는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지분양도를 한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지분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지분양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사업 운영권의 현상이 많이 변하였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채권액인 19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¹⁾.

2.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이 사건 지분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C이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지분양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분 30%의 가치는 3억 원 정도라는 것인데, 이 사건 지분양도로 C이 실제 면제받은 채무의 합계는 295,947,830원으로 거의 같다. 그리고 음식점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C이 다른 동업자인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성격의 채무들이라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법률행위(이 사건 지분양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C과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지분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판사 김연하

1) 원고는 소장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합쳐 하나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다가,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정리하지 않은 채 중간에 이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그 실질은 가액배상을 구하는 하나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보인다.